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143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94,697원 및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8. 2.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11. 9.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20. 11. 9.,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6. 9. 12.경 E 주식회사에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20. 8. 5. 기준 원금 3,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4,694,697원 합계 7,694,697원이다.

나. 한편,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G, H, 피고 B, I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C는 2018. 3. 29.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제1의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인 7,694,697원 및 위 돈 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무자력에 빠져 있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를 피고 B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1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당시 합계 약 168,20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 부동산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은 채무자인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 B이 피고 C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55,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사전증여받았고, 이를 고려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5. 4. 20. 피고 B의 K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K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사전증여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을 뿐 여전히 피고 B은 위 K조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망인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피고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피고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C의 기여분 산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피고 C가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기여분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사해의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 C는 약 5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과 피고 C는 2002. 8.경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사망한 2017. 9.경까지 약 15년 이상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피고 B은 L생의 장성한 아들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 피고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 존재 여부 내지 피고 B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협

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와 같은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경산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내지 12층 각 163.0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경산시 권 3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5.8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52분의 44 분.

1)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는 채무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피고 C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